

안산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안

의안 번호	1627
----------	------

발의연월일 : 2007. 11. .
발 의 자 : 이춘화의원외 14인

제안이유

- 시의회 의원이 소속 상임위원회와 관계없이 시정발전을 위하여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활동비를 지원함으로써 입법정책의 개발 및 의원발의 입법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주요골자

- 가. 하나의 의원연구단체는 3인 이상 7인 이하의 의원으로 구성(안 제3조).
- 나. 연구단체의 등록 및 지원에 관한 심의 · 의결은 의장, 부의장,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 간사 회의에서 관장(안 제4조).
- 다. 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연구활동계획서를 첨부하여 당해연도 3월 말까지 의장에게 제출하며, 의원은 2개 이상의 연구단체에 등록할 수 없음(안 제6조).
- 라. 연구활동계획 심의결과에 따라 연구단체에게 당해연도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예산의 100분의 10 범위내에서 연구활동비를 지원(안 제8조).
- 마. 연구활동비 지원금액은 위원회에서 결정하며, 1개 연구단체에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은 연간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연구단체는 연구활동비의 범위안에서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음(안 제8조)

제정조례안 : 별첨

관계법령발췌서 : 지방자치법

-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 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별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제23조(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범위안에서 그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제38조(지방의회의 의무 등)
 - ①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원이 준수해야 할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 ② 지방의회는 소속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6조(의원발의)
 - ① 지방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또는 의원 10인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 ②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의안은 그 안을 갖추어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예산수반사항 :

- 년간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105,600,000\text{원} \times 10/100 = 10,560,000\text{원}$

기타 참고사항 : 별첨

- 「국회의원 연구단체 지원규정」 1부
-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 1부
- 안양시의회 및 평택시의회 연구단체 지원 규칙 각 1부.

- 제23조(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범위안에서 그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제38조(지방의회의 의무 등)
 - ①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원이 준수해야 할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 ② 지방의회는 소속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6조(의원발의)
 - ① 지방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재직의원 5분의 1 이상 또는 의원 10인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 ②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의안은 그 안을 갖추어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예산수반사항 :

- 년간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105,600,000\text{원} \times 10/100 = 10,560,000\text{원}$

□ 기타 참고사항 : 별첨

- 「국회의원 연구단체 지원규정」 1부
-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 1부
- 안양시의회 및 평택시의회 연구단체 지원 규칙 각 1부.

안산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산시의회 의원으로 하여금 관심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의원 공동으로 연구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활동비를 지원함으로써 정책개발 및 자치입법의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의원 연구단체(이하 "연구단체"라 한다)라 함은 특정의 관심분야에 대한 자치입법, 정책의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안산시의회에 등록된 연구단체를 말한다.

제3조(연구단체의 구성) 하나의 연구단체는 소속 상임위원회에 관계없이 3인 이상 7인 이하의 의원으로 한다.

제4조(연구단체 지원 심의 · 의결) ① 연구단체의 등록 및 지원에 관한 심의 · 의결은 의장, 부의장,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 간사 회의(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관장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1. 연구단체의 등록에 관한 사항
2. 연구활동(주제) 등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연구활동비 책정 및 배분 · 조정 · 지급 · 회수에 관한 사항
4.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의 심의에 관한 사항
5. 연구단체 활동에 관한 사항 등 기타 필요한 사항

제5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한다.

② 정기회는 당해연도 연구활동계획서와 결과보고서 및 연구활동비 집행결과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매년 4월과 10월에 개최한다.

③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⑤ 안건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연구단체 대표의원을 출석시켜 연구활동 전반에 관한 내용을 청취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의원이 연구단체에 등록된 경우에 당해 의원은 관련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위원회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관련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있다.

제6조(연구단체 등록) ① 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등록 신청서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연구활동계획서를 첨부하여 당해연도 3월말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등록할 수 있다.
② 의원은 2개 이상의 연구단체에 등록할 수 없다.
③ 연구단체 등록이 위원회에서 부결된 경우에는 등록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제7조(연구활동기간) 연구활동기간은 위원회의 연구활동계획 심의결과를 의장이 연구단체에 통보한 날로부터 당해년도 10월말까지로 한다.

제8조(연구활동비 지원) ① 의장은 위원회의 연구활동계획 심의결과에 따라 연구단체에게 당해연도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예산의 100분의 10 범위내에서 연구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연구활동비 지원금액은 위원회에서 결정하며, 1개 연구단체에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은 연간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연구단체는 연구활동비의 범위안에서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연구단체의 등록, 연구주제, 연구활동비등에 대한 심의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심의결과를 연구단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연구활동비 지급기준 등) ① 연구활동비는 인건비(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여비 유인물비, 전산처리비, 재료비, 회의비, 임차료, 교통·통신비 등 [별표] 연구활동비 정산기준에 의한다.
② 원활한 연구활동을 위하여 연구원, 연구보조원 또는 보조원을 둘 수 있다.
1. 연구원 : 석·박사급 상당의 학력소지자로서 당해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진 자.
2. 연구보조원 : 통계처리·번역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로서 당해 연구분야에 대해 조교상당의 전문지식을 가진 자.
3. 보조원 : 타자, 계산, 원고정리 등 단순한 업무처리를 수행하는 자.
③ 의장은 연구활동비를 2회로 분할하여 지급하되, 1회 지급은 연구단체에게 심의결과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총액의 100분의 50을 지급하며, 2회 지급은 최종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한 후에 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그 잔액을

지급한다.

④ 연구활동비를 지급받은 단체는 승인된 연구활동 외의 다른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할 수 없다.

⑤ 전년도 연구활동 실적, 연구계획서의 충실후, 연구단체의 인원수 등을 고려하여 연구활동비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연구활동비를 회수하거나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1.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할 때

2.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때

3. 연구활동 결과보고서가 당초의 연구활동추진계획에 현저히 미달될 때

4. 의원의 자격이 상실된 경우

제10조(연구계획 등의 변경) ① 연구활동비를 지원받은 연구단체가 연구의원, 연구주제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 또는 제5호 서식에 의하여 변경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는 제1항의 변경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내에 심의 의결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의 심의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해당 연구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연구활동결과보고서 및 정산서 제출) ① 연구활동비를 지원받은 연구단체는 연구활동 중간보고서를 6월 30일까지 제출하고, 당해 연도말까지 최종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및 연구활동비정산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활동비 정산서에는 [별표]의 연구활동비 정산기준에 의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연구활동결과보고서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원연구사례집"으로 발간 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2008. 1. 1부터 시행한다.

[별표]

연구활동비 정산기준

비 목	정 산 기 준	비 고
인 건 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정경제부 회계예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기준」별표5 학술연구용역인건비기준단가에 의한다 · 산출기준 : (월임금액 ÷ 22) × 고용일수 	수령증(영수증) 등 증빙서류 첨부
여 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 원 : 「안산시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조례」별표3 여비지급기준표에 의함. ○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등 : 「공무원여비규정」별표1 여비지급구분표에 의함. 	"
유 인 물 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활동을 위하여 직접 소요되는 인쇄, 복사, 제본비 	"
전산처리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 연구내용과 관련된 자료처리를 위한 컴퓨터 사용료 및 그 부대비용 	"
재 료 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활동을 위하여 직접소요되는 물품구입비 	"
회 의 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내용과 관련한 자문회, 토론회, 공청회 등을 위해 소요되는 제반경비 	"
임 차 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청회등을 위한 시설임차료, 기기임차료 등 각종 임차료 	"
교통통신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내용과 직접 관련된 시내교통비, 전신전화 사용료, 우편료 	"
기 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활동에 소용된 비용중 상기 항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비용 	"

[별지 제1호 서식]

의원 연구단체 등록 신청서

안산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아 래

1. 단체명 :
2. 연구과제명 :
3. 구성의원 : 인

소속 상임위원회	성명	서명	비고

붙임 : 연구활동계획서 1부.

신청일 : 년 월 일

신청인 : 의원 외 인

안산시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연구활동 계획서

안산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_____년도 연구 활동 계획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연구단체명		
제 출 인	의원 외 인	
연구책임자	의원	
연구내용	주 제	
	목 적	
연구방법 및 세부추진계획	< “별첨” 구체적으로 기재>	
연구 활동비	총 액	
	산출내역	< “별첨” 구체적으로 기재>
기 타		

안산시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연구활동 심의결과 통보서

안산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규칙 제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 연구 단체의 _____년도 연구활동계획과 관련한 심의 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연구과제명	
연구책임자	
심의결과	
비 고	

통보일 : 년 월 일

안 산 시 의 회 의 장

[별지 제4호 서식]

연구활동 연구의원 변경신청서

안산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규칙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연구단체의 연구 활동 연구의원 변경신청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연구단체명		
제출인		대표자 의원(인)
변동의원	당초	의원
	변경	의원
변동일자		
변동사유		
비고		

제출일 : 년 월 일

안산시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연구활동 연구주제 변경신청서

안산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규칙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연구단체의 연구활동 연구주제 변경신청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 합니다.

연구단체명			
제출인		대표자	의원(인)
연구내용	당초	주제	
		목적	
	변경	주제	
		목적	
연구활동기간			
연구방법 및 세부추진계획		<“별첨” 구체적으로 기재>	
연구 활동비	총액		
	지출내역	<“별첨” 구체적으로 기재>	
변동사유			
비고			

제출일 : 년 월 일

안산시의회 의장 귀하

안산시의회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1627
----------	------

제안년월일 : 2008. 1. 29.

제 안 자 : 의회행정위원장

1. 수 정 이 유

- 연구단체의 구성인원을 조정하고, 연구단체 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를 명확히 하며, 연구단체 지원 규정 및 연간 1개의 연구단체에 지급할 수 있는 연구활동비를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함.

2. 주 요 골 자

- 하나의 연구단체의 구성인원을 3인 이상으로 수정함.(안 제3조)
- 연구단체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의장이 되며, 간사는 의회행정위원장이 되는 것으로 신설함.(안 제4조 제2항)
- 연구활동비를 당해연도 의정운영 공통운영업무추진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1개의 연구단체에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은 연간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수정함.(안 제8조)

- 연구활동비는 연구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인건비, 여비, 유인물비, 정산처리비용 등 [별표] 연구활동비 정산기준에 의하는 것으로 하고, 원활한 연구활동을 위하여 연구원, 연구보조원을 둘 수 있도록 하며, 연구원, 연구보조원 등의 자격요건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함.
(안 제9조)

안산시의회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안에 대한 수정안

안산시의회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3조 중 “3인 이상 7인 이하”를 “3인 이상”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연구단체 심의 의결)”을“(연구단체 심의위원회)”로 하고,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위원회 위원장은 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의장, 간사는 의회행정 위원장이 된다.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2항 중 “500만원”을 “100만원”으로 한다.

- ① 의장은 위원회의 연구활동계획 심의결과에 따라 연구단체에게 당해 연도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에서 연구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제1항내지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제2항제1호내지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 ① 연구활동비는 연구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인건비, 여비, 유인물비, 전산처리비용 등 [별표] 연구활동비 정산기준에 의한다.
- ② 원활한 연구활동을 위하여 연구원, 연구보조원 등을 둘 수 있다.

조문 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p><u>제3조(연구단체의 구성)</u> 하나의 연구단체는 소속 상임위원회에 관계없이 <u>3인 이상 7인 이하의 의원으로 한다.</u></p>	<p><u>제3조(연구단체의 구성)</u> <u>3인 이상</u></p>
<p><u>제4조(연구단체 심의 의결) ① (생략)</u> <u><신설></u></p> <p>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5. (생략)</p>	<p><u>제4조(연구단체 심의위원회) ① (원안과 같음)</u> ② 위원회 위원장은 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의장, 간사는 의회행정위원장이 된다. ③ 1.~5. (원안과 같음)</p>
<p><u>제8조(연구활동비 지원)</u> ① <u>의장은 위원회의 연구활동계획 심의결과에 따라 연구단체에게 당해연도 의정운영 공통 업무추진비 예산의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연구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u></p> <p>② 연구활동비 지원금액은 위원회에서 결정하며, 1개 연구단체에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은 연간 <u>500만원</u>을 초과할 수 없다.</p>	<p><u>제8조(연구활동비 지원)</u> ① <u>의장은 위원회의 연구활동계획 심의결과에 따라 연구단체에게 당해연도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에서 연구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u></p> <p>② <u>100만원</u></p>
<p><u>제9조 (연구활동비 지급기준 등)</u> ① <u>연구활동비는 인건비(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여비 유인물비, 전산처리비, 재료비, 회의비, 임차료, 교통·통신비 등 [별표] 연구활동비 정산기준에 의한다.</u></p> <p>② <u>원활한 연구활동을 위하여 연구원, 연구보조원 또는 보조원을 둘 수 있다.</u></p>	<p><u>제9조 (연구활동비 지급기준 등)</u> ① <u>연구활동비는 의원이 연구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인건비, 여비, 유인물비, 전산처리비용 등 [별표] 연구활동비 정산기준에 의한다.</u></p> <p>② <u>원활한 연구활동을 위하여 연구원, 연구보조원 등을 둘 수 있다.</u></p>

<p>1. 연구원 : 석·박사급 상당의 학력소지자로서 당해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진 자</p> <p>2. 연구보조원 : 통계처리·번역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로서 당해 연구분야에 대해 조교상당의 전문지식을 가진 자</p> <p>3. 보조원 : 타자, 계산, 원고정리 등 단순한 업무처리를 수행하는 자</p>	<p><u><삭제></u></p> <p><u><삭제></u></p> <p><u><삭제></u></p>
---	--